

#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

##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3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. 12.

발의자 : 진선미 · 김영호 · 강훈식

윤관석 · 김종대 · 정성호

소병훈 · 최도자 · 표창원

박찬대 · 추혜선 · 민홍철

한정애 · 남인순 · 노웅래

유동수 의원(16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의 근거가 없어 국민들이 피해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, 손실을 입은 국민은 위법·적법을 가리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어 경찰관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에 따른 직무집행에 대한 심리적 위축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음. 또 보상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국가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하고, 보

상금 지급 후 경찰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해당 손실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및 투명한 보상금 지급절차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.(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).

##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재산상의”를 각각 “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보상금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경찰위원회는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⑥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 보상금  
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  
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 
바에 따라 경찰위원회에 심사  
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  
고 경찰위원회는 필요한 자료  
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⑥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 
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 
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 
한다.

<신 설>